

미래교육혁신원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20.3.12		16		
2	2021.1.18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미래교육혁신원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(Innovation Institute for Future Education) (이하 '혁신원' 이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반 조사 및 연구
2.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분석·진단·환류 총괄
3. 대학교육 만족도 분석
4. 교육품질혁신위원회 운영 및 총괄
5. 교육·학습역량 개발 지원 및 운영
6. 미래교육혁신원 소속 센터 총괄 관리
7.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조 (조직) ① 혁신원에는 교수학습센터, 교육성과관리센터,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.

② 교수학습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실을 두고, 교육성과관리센터에는 교육성과지원실을 두며, 원격교육지원센터에는 원격교육지원실을 둔다.

③ 혁신원에는 교육과정(교양, 전공, 비교과)에 대한 교육품질 관리 심의를 위한 “교육품질혁신위원회”를 두며 센터별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둔다. 세부 내용은 교육품질혁신위원회 규정 및 본 규정 제11조(운영위원회)에 따른다.

④ 혁신원 조직도는 <별표 1>과 같다.

[본조 전문개정 <2021.1.18.>]

제4조 (구성) ① 혁신원에는 원장을 두며, 혁신원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 2 장 교수학습센터

제5조 (임무) 교수학습센터(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)는 교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원 교육역량개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2. 학생 학습역량개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
3. 교수·학습모델 연구 및 개발
4. 교수·학습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환류
5. 삭제 <2021.1.18>
6. 삭제 <2021.1.18>
7. 교수·학습지원프로그램 실태조사 업무
8.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6조 (구성) ① 교수학습센터에는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교수학습센터는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실을 둔다.
- ③ 교수학습지원실에는 실장을 두며, 실장은 부참사(실험기좌)이상으로 보한다.
- ④ 교수학습센터에는 교수학습 연구개발 등을 위해 연구교수,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 3 장 교육성과관리센터

제7조 (임무) 교육성과관리센터(Center for Academic Performance Management)는 우리 대학의 교육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품질평가 결과분석 및 개선환류
2. 핵심역량 기반 개인역량진단 도구 개발 및 관리
3. 대학 교육만족도 조사·분석·환류
4. 학습역량지원(비교과) 프로그램 총괄관리 및 운영
5. 강의평가, CQI 결과분석 등 강의품질관련 결과분석 및 개선환류
6.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8조 (구성) ① 교육성과관리센터에는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교육성과관리센터는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성과지원실을 둔다.
- ③ 교육성과지원실에는 실장을 두며, 실장은 부참사(실험기좌)이상으로 보한다.
- ④ 교육성과관리센터에 성과관리 연구개발 등을 위해 연구교수,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 4 장 원격교육지원센터<신설 2021.1.18>

제9조 (임무) 원격교육지원센터(Center for Distance Education Support)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활동 환경을 마련하고, 교육 효율성 제고, 원격교육체제 운영관련 주요사항 결정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비대면(온라인) 콘텐츠 제작
2. 비대면(온라인) 콘텐츠 인정기준 수립
3. 비대면(온라인) 콘텐츠 품질관리

4. 비대면(온라인) 강좌 지원
5. 비대면(온라인) 강좌운영 수요자 조사
6. 우수 콘텐츠 사례 공유 및 확산
7. 그 밖에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

[본조 신설 <2021.1.18>]

제10조 (구성) ① 원격교육지원센터에는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실을 둔다.
- ③ 원격교육지원실에는 실장을 두며, 실장은 부참사(실험기좌)이상으로 보한다.
- ④ 원격교육지원센터에 비대면(온라인) 콘텐츠 제작 및 품질관리를 위해 연구교수,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[본조 신설 <2021.1.18>]

제 5 장 위 원 회 <개정 2021.1.18>

제11조 (운영위원회) ① 각 센터의 운영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교수학습센터 운영위원회는 교수학습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육성과관리센터장, 원격교육지원센터장, 교수학습센터 부센터장, 각 학부(과)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- ③ 교육성과관리센터 운영위원회는 교육성과관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수학습센터장, 원격교육지원센터장, 교수학습센터 부센터장, 각 학부(과)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- ④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총장이 임명하는 학생, 직원, 교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 단, 학생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⑤ 센터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간 사업계획 및 실적(예산 및 결산 포함)
2. 중장기 발전계획 및 투자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주요 사항

[본조 전문개정 <2020.5.29., 2021.1.18>]

제 6 장 기 타 <개정 2021.1.18>

제12조 (기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혁신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 ,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- ② (규정폐지) 이 규정 시행에 따라 기존 「교수학습센터 규정」 은 폐지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조직도 <개정 2021.1.18>

